

공 연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 정 이 유

「공연법」상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공연자 등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 내 ‘연소자’ 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년’으로 변경(제3조)
- 나.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 처분 면제 세부 기준 마련(제7조)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 규제심사 실시 전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청소년 유해성 여부”로,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청소년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를 “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을 “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별표 2 제2호 가목의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 유해 공연물”로, “연소자에게”를 “청소년에게”로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을 “연소자유해(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에서 “청소년유해(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로, 본문 중 “연소자 유해(공연물, 선전물)”을 “청소년 유해(공연물, 선전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을 “연소자유해(공연물, 선전물)확인서”에서 “청소년유해(공연물, 선전물)확인서”로, 본문 중 “연소자유해(공연물, 선전물)”를 “청소년 유해(공연물, 선전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을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서 “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 등) ①-----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 등)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는 -----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생략)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 203 - 2739